

택시운임 및 요율 결정 고시

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8조(운임·요금의 신고 등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(운임·요금의 신고) 규정에 의거 택시운송사업 운임·요금 변경신고를 수리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·요율 등 조정요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영동군 관내 택시운임 및 요율을 다음과 같이 결정·고시하고자 합니다.

2022년 12월 06일

영 동 군



1. 목적

영업용 택시의 요금의 심야할증 요금을 조정하여 경영개선을 도모하고 택시이용 승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.

2. 택시운임 및 요율 결정내용(중형택시)

※ 심야할증 조정(심야할증 외 기본요금, 거리요금, 시간요금 등은 변동사항 없음)

기		준	현	행	변	경	비	고
기본운임			3,300원/1km		3,300원/1km			
거리운임			92m당 100원		92m당 100원		복합할증을 50%적용	
시간운임 (15Km/이하 주행시)			23초당 100원		23초당 100원		복합할증을 50%적용	
할증 운임	심야	22:00-23:00	-		20%		심야할증 변경	
	야	23:00-00:00	-		40%		심야할증 변경	
	운	00:00-02:00	20%		40%		심야할증 변경	
	행	02:00-04:00	20%		20%		기존과 같음	
	시계외 운행			20%		20%		
호출료			1,000원		1,000원			

※ 호출료는 무선호출시스템을 갖춘 택시를 호출하여 이용할 경우에 한하며 귀로 시에는 복합할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.

부 칙

1. 이 고시의 시행은 2022. 12. 16일 22:00시부터 시행한다.
2.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영동군 고시 제2019-32('19. 3. 14.)호는 폐지한다.